

##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안전점검과 화재보험,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으신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 ● 보험상담

▣: 귀 협회와 협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법률상 비상장 특수법인인 당행이 장부 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 하였을 때 특수건물 시가결정기준액표에 따라 귀 협회가 산출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발생시 보상한도와의 관계, 손해발생후 귀 협회의 보험가액 평가시의 각종 물가상승률 등의 감안 여부, 평가금액 결정방법내지 항목(투자비 등) 기준과 건물시가 결정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인 만큼 특수건물의 시가로 정한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의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건물의 신축비용을 계산하고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경년감가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한 후 초과보험과 전액보험, 일부보험 여부를 따져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초과보험은 초과되는 보험가입금액이 무효가 되고 손해액은 전액이 보상되며, 일부보험은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게 되므로 전액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책정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액은 건물 신축당시의 재료 및 품의 수량과 사고 당시의 단가를 곱하여 적산한 후 공과잡비를 합산하여 신축비를 산출하고 정액법에 따라 경년감가하며, 보험가액과 지급보험금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

• 보험가액산식(철근 콘크리트 사무실 건물의 경우)

사고당시의 건물 신축비 × (1 - 0.89% × 경과년수)

• 지급보험금산식

손해액 ×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따라서 귀은행에서는 건물의 신축당시의 신축비용과 건축자재의 물가상승률, 보험자가 적용하는 경년감가율 등을 고려하시어 보험사고 발생시 전액보험에 근접하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한국산업은행

응답자: 업무부〉

▣: 화재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현재 특수건물의 경우 1년

내 감정평가를 한 한국감정원 감정서금액, 상장법인인 경우의 장부가액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가결정 기준액표의 가액으로 보험가입된 계약에 대하여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주고 있으나, 보험가액이 손해당시 시가에 미달될 경우에는 피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율로 비례보상을 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보험가액을 현시가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자: 효성학원

응답자: 대전지부〉

▣: 아파트의 보험료는 얼마 안되지만 보험료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전세대가 일괄계약하여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방법과 장기계약에 의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바, 다음 갱신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장기계약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금암아파트

응답자: 전주지부〉

## ● 방재 상담

▣: 코오드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읍니다.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선은 어떤 전선를 말합니까.

▣: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코오드는 선심수가 5본이하이며 각 선심의 재료 및 구조가 같은 것으로서 정격전압이 100V 이상 600V 이하인 고무코오드, 비닐코오드, 고무캡타이어코오드, 비닐캡타이어코오드, 전열기용코오드, 금사코오드 등이 있읍니다.

〈질의자: 신광B / D

응답자: 위험관리부〉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이 1.7kg/cm<sup>2</sup>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방수압 및 방수량의 측정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수압 측정은 통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피토게이지를 사용하여 봉상방수 상태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방법은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 정도 떨어진 위치에 피토관 선단의 중심선과 방수류의 중심선과 일치하는 위치에 피토관 선단을 대고 압력계를 방류수와 직각이 되도록 하여 압력계의 눈금(방수압)을 읽게 됩니다.

방수량은 측정된 방수압을 이

용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방수압, 방수량, 노즐구경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Q = 0.653 \times D^2 \times P$$

Q=방수량(l/min)

D=노즐구경(mm)

P=방수압(kg/cm<sup>2</sup>)

따라서 위의 식에 방수압과 노즐구경을 대입함으로써 방수량(Q)을 산출하게 됩니다.

〈질의자: 세광B / D

응답자: 점검1부〉

▣: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는 체결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요령과 기준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 순환배관은 펌프와 펌프 토출측의 체크밸브 사이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물올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배관에서 분기하여 물올림탱크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올림탱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수조에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순환배관은 15%이상으로 하고 도중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펌프의 체결운전시 상시 정격토출량의 약 2~3%를 자동배수토록 하여 연속운전시에는 수온이 30°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순환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순환배관에 설치하는 오리피스의 최소구경을 3%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읍니다.

〈질의자: 협신기업

응답자: 위험관리부〉

▣: 자동화산 소화용구의 적응성 및 소화능력(설치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자동화산 소화용구란 화재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소화약제가 자동화산되는 것으로서 A급 및 B급 화재에 적용하며 1단위의 소화능력이 있읍니다.

설치장소는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주방·대량화기취급소로서 바닥면적이 10m<sup>2</sup> 이하는 1개, 20m<sup>2</sup> 이하는 2개이상 설치하게 됩니다.

〈질의자: 대림사우나

응답자: 점검2부〉

▣: 방폭지역인 위험물창고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스포트형 감지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 방폭지역의 전기설비는 방폭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방폭형의 감지기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정온식의 경우는 외국제품(방폭형 정온식 감지기)을 사용하시고 차동식 감지기 설치 장소에는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검출부는 방폭지역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자: 금성사

응답자: 점검1부〉